

## 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 결정일: 2022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개별 여행 상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광전수금(기타채무) 계정과목을 사용하였다. 영업부서에서 패키지 여행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대금입금을 완료하면 이를 관광전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약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관광전수금을 차감하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회계부서는 매월 영업부서가 제공한 여행상품별 정산내역을 근거로 관광 전수금 대변 잔액은 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 차변 잔액은 행사비(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하면서 관광전수금 잔액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기중 정산이 미완료된 여행상품에 대해서만 관광전수금의 기말잔액이 존재할 수 있었다.

####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적요	회계처리	
① 계약체결 및 고객 입금	A, B) 현금 100	A, B) 관광전수금 100
② 여행 진행	A) 관광전수금 80 B) 관광전수금 120	A) 미지급금 등 80 B) 미지급금 등 120
③ 여행 정산	A) 관광전수금 20 B) 행사비 20	A) 관광알선수입 20 B) 관광전수금 20

※ A, B 여행상품의 계약금액은 100, 회사지급비용은 각각 80, 120

그러나, 영업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회계부서는 영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여행상품별 관광전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회계처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회사는 사전 예방절차 또는 사후 정확성 검증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18년 결산과정에서 관광전수금 잔액에서 오류가 발견된 이후 모회사의 내부조사를 통해 ’14~’18년 기간 동안 관광전수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결산시점에 정산완료된 여행상품의 관광전수금 잔액은 수익(매출) 또는 비용(판매 관리비)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상계하고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여행상품의 관광 전수금 잔액만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영업부서의 정산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회계처리함으로써 관련 비용 및 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9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IG17에 따르면, 수익인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에 대한 선수금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정산자료에 대한 검증절차의 부재로 인해 관광전수금을 적절하게 정산하지 않아 결산기말의 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여행알선업의 경우 개별 여행의 관리단위이면서 손익을 인식하는 계정과목인 관광 전수금이 주된 계정과목이고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감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광전수금에 대한 내부통제 검토, 표본추출을 통한 지급 내역 검토 등 관광전수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5. 시사점**

회사는 내부결산프로세스 상 취약한 부분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시 회사의 영업 특성, 결산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파악하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증감사절차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증빙과 함께 상세하게 검토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